

낙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고시

경상남도 함안군, 창녕군, 합천군 관내 낙동강(국가하천)에 대하여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낙시 등의 금지지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1년 10월 14일

경 상 남 도 지 사

1. 금지지역의 구간

하천명	등 급	위 치	연 장	비고
낙동강	국가하천	함안군 칠북면 봉촌리 ~ 함안군 칠북면 이령리 (우)	2.0km	낙동강 다기능 보
		창녕군 길곡면 증산리 ~ 창녕군 길곡면 오호리 (좌)	2.0km	
		창녕군 이방면 등림리 ~ 창녕군 이방면 장천리 (좌)	2.0km	
		합천군 청덕면 삼학리 ~ 합천군 덕곡면 율지리 (우)	2.0km	

2. 주요내용

가. 낙시 등의 금지기간 및 행위제한

(1) 규제기간(낙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기간) : 연중

※ 계도기간 : 고시일로부터 2011. 12. 31까지

(2) 행위제한 : 야영, 취사 및 떡밥,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낙시행위 등

※ 적용 예외사항 : 학술조사, 어종조사, 낙시축제 등 부득이한 경우

나. 제한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

(1) 근 거 : 하천법 제46조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

(2) 과 태 료 : 하천법 제98조제1항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